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8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김정호·정성호·윤후덕

신동근 · 임종성 · 신현영

김경협 · 심상정 · 강훈식

전용기 · 김주영 · 김경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보도됨.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 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200억원 초과	6억4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	
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	
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	
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u>과세표준</u> <u>세율</u> 15억원 이	<u>과세표준</u> <u>세율</u> 15억원 이
<u>하</u> 1천분의 10	<u>하</u> <u>1천분의 10</u>
<u>15억원</u> 초 <u>1천500만원+(15억원</u>	<u>15억원 초</u> <u>1천500만원+(15억원</u>
과 45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과 45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u>이하</u> <u>1천분의 20)</u> 7천500만원+(45억원	<u>이하</u> <u>1천분의 20)</u> 45억원 초 7천500만원+(45억원
45억원 초 을 초과하는 금액의	과 1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u>과</u> 1천분의 30)	<u>과 100구원</u> <u>을 조와하는 급객의</u> 이하 1천분의 30)
<u> 1선반의 50/</u>	100억원 초 2억4천만원+(100억
	과 200억원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의 1천분의 40)
	200억원 초 6억4천만원+(200억
	과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천분의 50)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